

# 2019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 계획안

의안 번호	18-129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8년 11월 일  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이 개정되어 “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”는 규정에 따라 2019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.

## 2. 주요골자

가. 출연대상: 마포문화재단

나. 관련근거

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
-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11조

다. 사업 내용 및 출연 필요성

- 마포문화재단의 효율적 시설운영 및 원활한 사업추진, 마포지역 문화 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출연금 지원 필요

라. 출연금

- 출연 여부에 대한 구의회 의결 후, 2019 회계연도 사업예산(안) 심의를 통해 출연 금액 결정

마. 추진일정

- 2018. 11월: 2019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 계획(안) 수립
- 2018. 11월: 구의회 의결 요청
- 2018. 12월: 구의회 의결
- 2018. 12월: 예산 심의 및 확정

### 3. 참고사항

○ 관련규정

- 지방재정법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(재정 지원)
-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(기본 재산의 조성) 및 제11조(운영재원 등)

### 4. 출연 현황

(단위 : 천원)

회계연도	총예산	자체수입	출연금	비고
2014	6,528,543	4,490,571	2,037,972	본예산 기준
2015	6,922,163	4,711,386	2,210,777	
2016	8,105,647	5,016,647	3,089,000	
2017	8,858,720	4,744,520	4,114,200	
2018	8,936,848	4,533,395	4,403,453	

### 5. 2019년도 출연금 요구내역

- 출연 여부에 대한 구의회 의결 후, 2019 회계연도 사업예산(안) 심의를 통해 결정

(단위 : 천원)

총예산	자체수입	출연금	주요증액사유
9,770,852	4,388,515	5,382,337 (증9억7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인력운영비 7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정원5명 증원, 공무원 22명 증가</li> </ul> </li> <li>● 지역문화 5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남북문화교류 조성사업 신설</li> </ul> </li> <li>● 홍보마케팅 5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라이브중계 및 전산개발비 신설</li> </ul> </li> </ul>